

[무배당 AXA마일리지운전자상해보험 II 2601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장기 - 장기상해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등

무배당 AXA마일리지운전자상해보험 II 2601

3. 보험의 목적

피보험자의 신체, 자동차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각종 위험에 대한 피보험이익, 법률상의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손해

4.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 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보통 약관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운전자용)	10/20년	전기납	18~80세	월납 연납
	자동차사고부상(1~14급)(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1~11급)(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1~3급)(운전자용)					
상해사망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					
교통상해사망(운전자용)					
교통상해후유장해(3~100%)(운전자용)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운전자용)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 일한도)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일반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 일한도)					
일반상해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					
교통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 일한도)(운전자용)					
깁스치료비					
일반상해수술					
상해수술(1~8종)(시술포함)					
골절진단의료비용(치아파절제외)					
일반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일반상해골절수술					
5대골절진단					
5대골절수술					
일반상해화상진단					
일반상해화상수술					
교통상해5대골절진단(운전자용)					

<p>교통상해5대골절수술(운전자용) 응급실내원비(응급) 일반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 중증외상치료비(권역외상센터)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 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가용)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 중대한특정상해수술(뇌,내장손상)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운전자용) 신주말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운전자용) 운전중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운전중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운전자용) 일상생활강력범죄발생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교통상해사망(자가용)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자가용)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자가용) 고속도로교통상해사망(운전자용) 상해MRI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 상해C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 탈구염좌및과긴장수술 상해척추손상수술 상해관절(무릎·고관절)손상수술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운전자용)</p>			18~60세	
			18~80세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 II (중대법규 위반, 동승자포함6주미만)(운전자용) 운전중 사고별금(대인)(3천만원한도)(운전자용) 운전중 사고별금(대인)(2천만원 초과, 1천만원한도)(운전자용) 운전중 사고별금(대인)(2천만원한도)(운전자용) 운전중 사고별금(대물)(운전자용) 심급별 운전중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특정 사고경찰조사포함)(운전자용) 운전중 보복 운전피해보장(운전자용) 보이스피싱손해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자동차사고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별금비용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변호사 선임비용 면허정지보험금(영업용) 면허취소보험금(영업용) 일반상해상급종합병원수술 상해간병인사용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상해간병인사용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갱신형)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II	최초	5년	전기납	18세~80세	연납월납
		갱신	5년	전기납	23세~95세	연납월납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최초	3년	전기납	18세~80세	연납월납
		갱신	3년	전기납	21세~95세	연납월납
		갱신	2년	전기납	36세~98세	연납월납
		갱신	1년	전기납	27세~89세	연납월납
	제도 성 특별 약관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보험료자동이체납입				
		제재위반 부담보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장애인전용보험전환	-	-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공탁금 선지급)				
		보험계약 변경 정산액 분할납입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주1)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주2)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에서, 보통약관의 잔여보험기간이 최초가입 보험기간(3년) 미만일 경우 해당 잔여보험기

간만큼 보험기간 적용함

5.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6.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7.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1) 마일리지 할인

가. 적용 대상 및 할인 신청에 관한 사항

- ① 마일리지 할인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할인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에 부가 가능함.(유지중인 계약의 피보험자가 영업용 운전자 또는 비운전자로 변경된 경우, 마일리지 할인 적용은 종료됨.)
- ② 기존 유지 중인 계약에서 마일리지 할인 신청은 마일리지 할인신청일부 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 ③ 마일리지 할인 정산일은 마일리지 할인을 운행 정보 전송 후에 마일리지 할인을 신청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선택한 날로 함. 단,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마일리지 할인 정산일은 해지일의 다음날로 함.
- ④ 마일리지 할인 대상 차량(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함.)은 1증권 당 1차량에 한함. 단, 피보험자동차로 이미 등록되어 할인 받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가족 중 1인에 한하여 별도의 증권으로 마일리지 할인 신청이 가능함. 단, 정산 시 주행거리는 피보험자 각각의 계약에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동일하게 적용함.
- ⑤ ④에서 정하는 피보험자의 가족 중 1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
 - 본인의 배우자
 - 본인의 부모
 - 본인의 자녀
- ⑥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행거리 정보를 위조·변조한 경력이 있는 경우, 마일리지 할인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상기 가입제한 사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마일리지 할인 적용을 받은 경우,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할인 신청을 취소하며, 그 때까지 마일리지 할인을 통해 정산 지급된 금액(이하 “보험료 할인분”이라 함.)을 환수함.

나. 마일리지 할인 신청 시 운행정보의 전송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마일리지 할인 신청 이후에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기타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송하여야 함.
- ② 다만, 당사 유효한 자동차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동차로서 할인 신청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주행거리를 회사로부터 확인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주행거리를 전송하지 않을 수 있음

다. 마일리지 정산을 위한 운행정보의 전송

- ① '7.(1).가.'에 따라 마일리지 할인을 신청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확인을 위하여 사진 및 기타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송하여야 함.
 - 직전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고지한 날로부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신청한 날까지의 운행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송부하여야 함.
- ②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날(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방법에 따라 운행정보를 회사에 알려야 함.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를 교체(대체)한 날(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10일 이내에 교체(대체) 이전 차량과 교체(대체) 이후 차량의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송하여야 함. 이 경우, 회사는 교체(대체)전 차량에 대한 마일리지 할인을 정산한 후, 교체(대체) 후 차량에 대해 마일리지 할인을 적용함
-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마일리지 할인 적용을 종료하는 경우 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방법에 따라 운행정보를 회사에 알려야 함.
 - 직전 정산기간 주행거리를 고지한 날로부터 해지시점까지 주행거리 확인을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를 송부하여야 함.
-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마일리지 할인 정산을 제한할 수 있음.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①에 따라 회사에 송부하여야 하는 운행정보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②에 따라 회사에 송부하여야 하는 운행정보를 기한 내에 송부하지 않은 경우
- ⑤ ③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송부하여야 하는 운행정보를 기한 내에 회사에 송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주행거리에 따라 정산된 보험료 할인분을 지급하지 않음.
- ⑥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경우일지라도 주행거리를 고지한 경우에는 주행거리에 따라 정산된 보험료 할인분을 지급함.
- ⑦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2), 3)에 따라 운행정보를 송부 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마일리지 할인 신청을 취소하며, 그 때까지 정산 받은 보험료 할인분을 환수함.
 -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하는 경우
 -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의 주행거리 정보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 촬영사진의 원본을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라. 마일리지 할인의 적용

① 정산된 보험료 할인분의 환급

- 보험회사는 운행정보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의 은행계좌로 정산된 보험료 할인분을 송금. 다만, 정산일 이전에 운행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된 보험료 할인분을 송금.
- 위기한 내에 정산된 보험료 할인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 단,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② 보험료 할인분의 정산

- 보험료 할인분은 직전정산일부터 당회정산일까지 납입한 영업보험료에 “1년간 주행거리별 할인율”을 곱하여 산출함.

보험료 할인분	=	직전정산일부터 당회정산일까지 납입한 영업보험료	×	1년간 주행거리별 할인율
------------	---	------------------------------	---	------------------

- “1년간 주행거리별 할인율”은 아래의 주행거리별 할인율을 적용함.

< 1년간 주행거리별 할인율 >

1년간 주행거리	할인율
10,000km이하	할인 전 영업보험료의 6%
10,000km초과	할인 전 영업보험료의 0%

- “1년간 주행거리”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음.

1년간 주행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 365

- 1) 일평균 주행거리
: (당회정산일의 주행거리 - 직전정산일의 주행거리) ÷ 경과기간
- 2) 경과기간
: 직전정산일로부터 당회정산일까지의 기간
- 3) 용어풀이
 - 당회정산일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마일리지 할인 정산을 신청한 이후, 피보험자자동차의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의 주행거리 정보를 촬영하여 전송한 날짜
 - 당회정산일의 주행거리 : 당회정산일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촬영한 피보험자자동차의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의 주행거리 정보
 - 직전정산일 : 직전 정산일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마일리지 할인 정산을 신청한 이후, 피보험자자동차의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의 주행거리 정보를 촬영하여 전송한 날짜(다만, 최초 마일리지 정산 신청인 경우, 마일리지 할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 직전정산일의 주행거리 : 직전정산일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촬영한 피보험자자동차의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의 주행거리 정보(다만, 최초 마일리지 정산 신청인 경우, 마일리지 할인 신청일에 촬영한 피보험자자동차의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의 주행거리 정보를 기준으로 함)

8. 갱신탁약에 관한 사항

가. 대상 특별약관

- (갱신형)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II
-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나. 갱신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상기 특별약관은 갱신주기((갱신형)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II :5년 /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3년마다 자동갱신 됨
 - 갱신보험료의 계산
 상기 특별약관에 적용할 보험료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 '보험료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함)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함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에 대해 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간병인지원비용을 재산정 및 위험률 재산출 등으로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함
 - 갱신보험료의 안내
 회사는 상기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보험료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함
- 다. 보험료 납입방법
 - 상기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전기간 납입하는 것으로 함

9. 보험료운영에 관한 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보장성보험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내로 운영함

10.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를 적용

11.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며,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선납보험료는 해당 계약 해당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함

12. 추가적립보험료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3.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4.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이 계약의 적용이율 + 1.5%」로 함

15.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6. 조건부 인수를 위한 특별약관

(1)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보험계약당시 또는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함으로써 인하여 이륜자동차의 운전과 관련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을 위험 정도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짐.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을 부가시에는 이륜자동차 운전을 제외

한 직업 또는 직무에 해당하는 상해급수를 적용함. 이륜자동차운전및 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

17. 계약내용이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 등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계약내용이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함.
 - 가.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나.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다.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 라.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 (2)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2회 이상 계약자에게 알림.
- (3) (1)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
- (4) 회사는 '(1)'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 산출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함.
 - 가. 계약내용 변경일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적용하며,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보험금이 변경될 수 있음.
- (5) '(1)'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음.

18. 간병인지원 관련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 (1) 대상 특별약관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2) 피보험자가 회사에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고객이 선택하여 사용한 간병인에 대해 간병인 사용비용이 발생하였을 때, '18.(3)'에서 정한 간병인지원비용을 지급함. 단, 보험수익자는 간병인 사용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생한 영수증이므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이어야 함)을 제출하여야 함
- (3) 간병인지원비용이라 함은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금액을 말함
- (4) '18.(3)'에서 정한 간병인지원비용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함
- (5) '18.(2)'에 따라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지원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함

19. 심급별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운전자용)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구분	보험가입금액 ^{주1)}	공제금액	보상한도
1심(경찰조사포함)	1천5백만원 기준	해당 심급 변호사선임비용의 50%	5백만원
항소심(2심)			5백만원
상고심(3심)			5백만원

주1) 최고가입금액은 1,500만원으로 함

20. 기타

- (1)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는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등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인수심사에 활용하지 않음.
- (2)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
- (3)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한 안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으로 가입하는 경우, 회사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4) 판매채널 : 범용(금융기관보험대리점(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한 판매는 제외)
- (5)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 ① 적용근거: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 ② 적용범위: 이 특약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시행령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③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름
 - ④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함.
 - ⑤ 신규계약은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시 이 특약을 신청하고 청약시 최초 납입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처리 가능.
 - ⑥ 비영구 장애의 장애기간 종료 후, 다시 장애인이 된 경우는 장애인전용보험 재신청 및 전환가능.
 - ⑦ 이 특약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에 부가하되,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도 전환 특약 가입 신청시 전환 가능
- (6) 아래의 A 특별약관과 B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A	B
1	· 운전중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2	· 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3	· 상해MRI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	· 상해C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

(7) 아래의 A 특별약관은 B 특별약관중 하나의 특별약관 이상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A	B
1	· 상해관절(무릎·고관절)손상수술	· 일반상해수술
2	· 상해척추손상수술	
3	· 탈구염좌및과긴장수술	
4	· 상해간병인사용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간병인사용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5	· 5대골절진단	· 일반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 골절진단의료비용(치아파절제외)
6	· 교통상해5대골절진단(운전자용)	
7	· 5대골절수술	· 일반상해골절수술
8	· 교통상해5대골절수술(운전자용)	

(8) 아래의 A 특별약관은 B 특별약관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A	B
1	· 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 운전중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2	· 응급실내원비(응급)	· 일반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
3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운전자용)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운전자용)
4	·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 자동차사고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9) 아래의 각 그룹단위별 보장특약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1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운전자용)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운전자용)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운전자용)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운전자용)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운전자용)
2	· 운전중사고별금(대인)(3천만원한도)(운전자용) · 운전중사고별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운전자용) · 운전중사고별금(대인)(2천만원한도)(운전자용)

(10) 아래의 특별약관의 경우, 자가용운전자만 가입 가능함.

- 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가용)
-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자가용)
-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자가용)
-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교통상해사망(자가용)
-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운전자용)
- 신주말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운전자용)
- 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11) 면허정정보험금(영업용) 및 면허취소보험금(영업용) 담보의 경우 영업용 운전자에 한하여 부가 가능함

[보험계약 변경 정산액 분할납입 특별약관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장기 - 제도성 특별약관

2. 보험종목의 명칭 등

보험계약 변경 정산액 분할납입 특별약관

3. 적용대상계약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

- (1)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자적립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한 계약
- (2) 이 특별약관의 적용대상 정산액이 10만원 이상이면서 분할납입금액이 1천원 이상인 계약
- (3) 이 특별약관의 적용대상 정산액이 해당 계약의 정산액 발생시점 해약환급금 이하인 계약
- (4) 기본계약이 자동갱신되지 않는 계약
- (5) 단체취급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
- (6) 정산액 발생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의 잔액이 없는 계약
- (7)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계약

4. 적용대상 정산액 및 분할납입금액에 관한 사항

- (1) 이 특별약관의 적용대상 정산액은 해당 계약에서 정산액이 발생한 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 각각의 정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단, 자동갱신되는 선택계약의 정산액은 제외함
- (2)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분할납입금액 및 최종분할납입금액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함
- (3)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분할납입기간 중 중도에 잔여 분할납입금액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직전 분할납입금액 납입일 시점부터 일시납입 시점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비용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함

5. 분할납입기간에 관한 사항

- (1) 이 특별약관에서 분할납입기간은 계약의 잔여 납입기간과 5년 중 긴 기간 이내로 운영함. 단, 계약의 잔여 보험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분할납입기간을 계약의 잔여 보험기간 이내로 함
- (2) 이 특별약관의 체결 시점에 정해진 분할납입기간은 그 이후에 다시 변경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이 특별약관의 사업방법서 별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적용대상계약의 사업방법서 별지를 따름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특별약관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장기 - 제도성 특별약관

2. 보험종목의 명칭 등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특별약관

3. 대상 계약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특별약관(이하 “납입유예특약”이라 한다.)은 보장성 인보험에 해당하는 계약 중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특약’ 대상 상품에 해당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4.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보험계약(이하 “해당계약”이라 한다)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유예”라 한다)를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계약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보험료의 대체납입으로 인하여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에서 대체 납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는 납입유예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계약자는 납입유예 신청시 보험료 납입이 유예될 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한다)을 「6개월 또는 12개월」 중 하나의 기간으로 선택해야한다. 이 때, 납입유예기간은 해당계약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주기 이상으로 선택 가능하다.

나. ‘가’에서 정한 「회사가 정한 사유」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납입유예 신청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배우자로 하며, 이하 같다)의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이 때, 출산은 유산 및 사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2)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다) 기간 중인 경우

이 때,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해당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적용대상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 당시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다.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시에 약관 제6조(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시 구비서류)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없다.

(1) 이미 납입유예를 신청한 경우(신청 이후 취소한 경우 및 다른 제도성특약을 통해 납입유예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해당계약 기본계약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기본계약이 보험료 납입 면제된 계약 및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지난 계약을 포함한다) 또는 해당계약 기본계약 보험료 의무납입이 종료된 계약

(3) 보험료 납입연체가 있는 경우. 단, 연체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4)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자동대출납입 또는 전액자동대체납입이 적용된 계약

(5) 중도인출 또는 보험계약대출이 적용된 계약

- (6) 해당계약 기본계약의 잔여 납입기간(기본계약이 갱신형인 경우 기본계약갱신일까지의 잔여 납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단, 기본계약의 잔여 납입기간(기본계약이 갱신형인 경우 기본계약 갱신일까지의 잔여 납입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6개월 납입유예만 신청이 가능하다.
- (7) 납입유예기간 동안 납입하지 않을 해당계약 보험료(이하 “납입유예 보험료”라 한다) 총액이 납입유예 신청 시점 해당계약의 해약환급금(단, 보험료의 대체납입으로 인하여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에서 대체납입 예정인 보험료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단, “납입유예기간 중 갱신형보험의 갱신일이 도래하여 납입유예기간 동안 납입유예 보험료가 해당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유예 신청일 기준의 갱신형 보험의 요율에서 갱신시 연령증가분만 반영하여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 (8) 납입유예기간 동안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에서 대체납입 예정인 보험료가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을 초과하는 날이 있는 경우.

5. 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 가. 납입유예를 신청한 경우 계약자는 신청 이후 최초 도래하는 해당계약의 납입 기일부터 납입유예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납입유예기간동안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하고 계약자적립액 등을 계산한다.
- 나. 납입유예기간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납입유예기간과 동일기간(이하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라 한다)동안 납입유예 보험료를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해야 한다. 이때,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의 보험료란 납입유예 신청 전의 해당 기간 납입기일에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할 보험료(이하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정상보험료”라 한다)를 말한다.
- 다. ‘가’ 내지 ‘나’에도 불구하고 적립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를 적용하지 않는다. 납입유예기간 동안 적립보험료의 납입을 중지하며, 납입유예기간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적립보험료의 납입을 재개한다.
- 라. ‘나’에서 납입유예기간 중 해당계약 갱신형보험의 갱신일 도래시, 갱신형보험의 납입유예보험료는 갱신일 이전기간에 대해서는 갱신 전 보험료, 갱신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갱신 후 보험료로 한다.
- 마.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유예 보험료와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정상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에는 해당계약 보통약관 일반조항의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해당 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이때, 해당계약 보통약관 일반조항의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서 보험료는 “납입유예 보험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납입유예 보험료 전액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 바. ‘마’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계약 보통약관 일반조항의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조항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이때, 해당계약 보통약관 일반조항의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조항에서의 보험료는 “납입유예 보험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사. ‘가’ 내지 ‘나’에도 불구하고 해당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으로 보험료가 납입면제 된 경우, 계약자는 즉시 납입면제 되기 전까지의

해당계약의 납입유예 보험료 전체를 일시 납입하여야 하며, 해당계약 보통약관 일반조항의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납입유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 아.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유예 취소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해당계약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또한 납입유예 취소 신청시 납입유예 취소 신청전까지의 납입유예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 자.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납입유예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차.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정상보험료를 선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유예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해야 한다. 이때, 선납 할인이 있는 경우에도 납입유예 보험료는 선납 할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 카. ‘자’ 및 ‘차’의 경우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6. 기타

- 가.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및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보험가입금액 감액, 계약자, 납입기간 및 기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 나.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및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중도인출 및 중도인출, 보험계약대출 및 중도부가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 다.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유예기간의 종료,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및 납입유예 신청 및 처리로 인해 계약에 적용되는 주요사항을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안내한다.
- 라. 회사는 해당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각 지급금에 해당하는 해당계약의 납입유예 보험료”를 각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일시 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 마. 회사는 계약자가 납입유예를 신청할 때 계약자에게 납입유예특약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계약자 확인(【별첨】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특별약관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참조)을 받는다.
- 바. 그 외 기타사항은 대상계약에 준한다.

